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개인회원약관

제 1 조 (정의)

-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②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이하 "카카오뱅크"라 함)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 발급을 신청하여 카카오뱅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자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카오뱅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 ④ '영업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이 아닌 날을 말합니다.
- ⑤ '업무대행사'란 KB 국민카드 등을 포함하여 가맹점관리, 승인중계, 전표매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제 2 조 (카드의 관리 및 이용)

-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카오뱅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 3 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하여 무효로 된 카드를 이용할 수 없으며, 무효로 된 카드는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는 등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이용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⑥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이용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카오뱅크 및 가맹점 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카드의 발급)

카카오뱅크는 카드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신청인에게 카드를 발급합니다.

제 4 조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 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에 기재됩니다.
- ② 카카오뱅크는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의 잔여 유효기한까지는 카드를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 ③ 카드의 유효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카카오뱅크는 회원에 대한 심사 등을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갱신발급 예정일로부터 1 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발급 예정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 발급합니다.
- ④ 재발급 등으로 유효기한이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 5 조 (연회비 및 발급수수료)

- ① 카카오뱅크는 회원으로부터 카드와 관련하여 연회비 및 카드발급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연회비 및 카드발급수수료는 회원이 발급 받은 카드등급 및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카카오뱅크는 회원에게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제 6 조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 ①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카오뱅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카드의 발행, 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② 카카오뱅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③ 카카오뱅크는 제 2 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계약해지한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④ 카카오뱅크는 제 2 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 일의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해지한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7 조 (카드의 비밀번호)

- ① 회원은 카카오뱅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카드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하며, 카카오뱅크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매 거래 때마다 카카오뱅크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② 카카오뱅크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회원이 입력한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함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합니다.
- ③ 회원은 제 1 항의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카드의 이용제한 및 해지)

- ① 카카오뱅크는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 결제계좌의 예금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이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용 제한(정지) 사실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제한(정지) 즉시 알려드립니다(카카오뱅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제한(정지) 당일에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단, 제 8 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 이용이 제한(정지)될 수 있으며, 사유발생 당일 고지합니다.
 1. 비밀번호의 입력횟수 초과
 2. 인출(이체)한도 또는 카드 이용한도 초과, 카드 결제계좌의 출금가능잔액 (대출약정 계좌는 대출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3. 카드의 결제계좌가 사고신고계좌 또는 법적 제한이 있는 계좌인 경우
 4. 카드의 결제계좌가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인 경우
 5. 기타 회원의 카드결제계좌와 연계된 금융기관이나 카카오뱅크가 정한 지급 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인 경우
 6.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7.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대리인이 카카오뱅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8.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② 카카오뱅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 3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카오뱅크는 별도의 안내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3. 이민,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③ 카카오뱅크는 해킹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은 전화, 모바일앱 등을 통하여 카카오뱅크에 대해 카드사용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카카오뱅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카드의 이용한도)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1 회, 일, 월 한도 등)는 카카오뱅크가 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하며, 동 한도는 이용 당시의 결제계좌의 출금가능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기설정된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카카오뱅크에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카카오뱅크는 이용금액, 이용가맹점,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카드의 국내이용)

- ① 회원이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일시불에 한하여 출금가능 범위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온라인 마감·결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산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및 출금가능 잔액 확인을 즉시 할 수 없어 가맹점에서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 RF 후불교통기능이 있는 카드를 발급 받아 교통기관 등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카드의 해외이용)

- ① 국내외 겸용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은 카카오뱅크가 정하는 이용한도 내에서 국제카드 브랜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해외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해외 가맹점에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의 회원은 카카오뱅크가 정하는 인출한도 내에서 카카오뱅크와 제휴한 기관이 설치한 해외 자동화기기(ATM)에서 카드로 현금(외화)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카드의 해외 이용시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 카드의 해외이용시 카카오뱅크는 회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대금결제)

- ① 카카오뱅크는 카드이용대금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하며 출금사실을 회원의 결제계좌에 기장하여 드립니다. 단, RF 후불교통카드기능 이용으로 인한 교통이용대금 등에 대해서는 월 1 회(이용일 기준 익월 10 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최초 도래하는 영업일) 출금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기일에 교통이용대금 등이 출금되지 않을 경우 출금기준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연체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금기준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 일로 합니다.
- * 연체이자 산정 시 출금기준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 연체료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연체이율×연체일수/365
- ③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해외 자동화기기(ATM) 사용 포함)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 대금(제 수수료 포함)은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승인시점 기준 가장 최근 고시된 대외결제은행의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어 출금됩니다. 단, 무승인 건은 카드 사용내역이 카카오뱅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의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 ④ 전항의 청구금액에는 비자/마스터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 및 카카오뱅크가 부과하는 해외이용수수로가 포함되며,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카드이용거래를 취소할 경우에도 일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자동이체결제)

- ① 카카오뱅크는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결제일에 자동이체 결제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기명 날인된 수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③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현재 잔액(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 부족으로 카카오뱅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 1 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내지 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일 카카오뱅크의 자동이체출금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자동 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카오뱅크의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카오뱅크는 즉시 신고 접수자, 접수번호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제 1 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회원은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하여 카카오뱅크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카카오뱅크에게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 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 3 자의 카드부정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카오뱅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카카오뱅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경우 제외)에는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2.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한다)
 -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카오뱅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7.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카오뱅크 또는 업무대행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 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카오뱅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카오뱅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과 카카오뱅크 및 업무대행사는 분실·도난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제 15 조 (위·변조 카드에 대한 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카오뱅크에 있습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2. 카드의 양도, 대여 또는 담보 목적으로의 제공
 3. 『전자금융거래법』 제 9 조제 2 항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카카오뱅크로, “이용자”는 회원으로 본다)
- 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카오뱅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서면, 모바일앱, 고객센터 등의 채널을 활용해 카카오뱅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카카오뱅크는 회원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 발급경위, 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용,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모바일앱, 전자우편(E-MAIL), 유선,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알람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③ 회원은 카카오뱅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연체 등의 정보 보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카오뱅크에 책임이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카카오뱅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카오뱅크가 금융 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의 책임으로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에게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제 17 조 (변경사항의 통지)

- ① 회원은 주소, 전자우편(E-MAIL),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대금결제용 예금계좌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모바일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카카오뱅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카카오뱅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 1 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카오뱅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 18 조 (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 ① 카카오뱅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카드 이용시 제공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카카오뱅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2. 카카오뱅크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 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3.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 및 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 ② 카카오뱅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바일앱, 홈페이지, 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2. 제 1 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 ③ 카카오뱅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모바일앱, 홈페이지, 이용내역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알림서비스(미이용 시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2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 2 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 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내역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알림서비스(미이용 시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1. 제 1 항 제 1 호, 제 2 호 : 사유발생 즉시
 2. 제 1 항 제 3 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 개월 이전
- ④ 카카오뱅크는 회원의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실적을 모바일앱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 19 조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통보)

- ① 카카오뱅크 및 업무대행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탈퇴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가맹점과 회원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카오뱅크 및 업무대행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카카오뱅크 및 업무대행사는 회원이 카드 발급 및 해지에 관한 사항과 약관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 및 연체내용 및 연체금액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휴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이 자기 거래상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카დი용대금 납입독촉장 등에 의하여 연체사실을 사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 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카카오뱅크 등에 손실을 야기한 경우
 2. 카드의 부당한 이용 등으로 신용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④ 본 조에 의한 제공내용에 대하여 회원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및 업무대행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정보 제공요건의 충족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카카오뱅크 및 업무대행사는 회원에게 이의신청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⑥ 제 5 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0 조 (약관변경 승인)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카오뱅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 개월 이전까지 카카오뱅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카카오뱅크는 이를 알림서비스 등 회원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 개월 이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회원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 ③ 카카오뱅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21 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카카오뱅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2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3 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그 외 개별약관 및 상관례,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릅니다.

- 부칙 -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 전·후 대비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2조 (카드의 관리 및 이용) ① ~ ③ (생략)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 ⑥ (생략)	제2조 (카드의 관리 및 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u>다만,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u> ⑤ ~ ⑥ (현행과 같음)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에 따른 금감원의 약 관변경 권고를 고려하여 불공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조항의 개정 (회원 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 해 발생하는 책임만 부담 토록 단서 추가)
제4조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① ~ ② (생략) ③ 카드의 유효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카카오뱅크는 회원에 대한 심사 등을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갱신발급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발급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 발급합니다.	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카드의 유효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카카오뱅크는 회원에 대한 심사 등을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갱신발급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발급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여전법 시행령(제6조의6제2호)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④ (생 략)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 발급합니다. ④ (현행과 같음)	
---------	---	--